

의안번호	2209555
의 퇴 인	김동아 의원
회 답 일	2025. 6. 11.
추 계 번호	25A209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제1항(자금 등의 지원) 및 제8조의2(자금의 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담(안 제8조의2)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8조제1항(자금 등의 지원) 및 제8조의2(자금의 확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사용자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¹⁾,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²⁾으로 부담하도록 규정
-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그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따르더라도 가능하나, 집단에너지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한다면 취지에 맞게 시행되었을 때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전기사업법」 제49조³⁾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으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근거하더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국내에 집단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현행 재정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발의된바, 이를 고려한다면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이나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과 정부의 재원 투입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_____ _____지원하여야 한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기 안전점검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음

3)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된다면 기존에 실시 중인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제8조의 집단에너지 관련 재정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추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 사업의 내용과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소요 비용 또한 국가재정 여건 및 정부의 재원 투입 의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중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음⁴⁾
 - * [참고자료] 집단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 현황
- 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사용자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담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4) 해당 내용은 소관 부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현재 실시 중인 재정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의 취지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업무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답변자료 또한 회신하지 아니하였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집단에너지 관련 재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5 예산 (추경)
산업 통상 자원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139-302)	-	(291,038)
	- 장기사용열수송관개체	·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 개체와 안전관리 강화 비용을 장기·저리 용자지원	5,000 ¹⁾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열 이용기술 개발(R&D) (전력산업기반기금, 5703-338)	· 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공정열을 태양 열, 히트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으로 가온 (加溫)하여 공급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911
	합계		5,911 ¹⁾

주: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사업의 경우 일부 내역만 개정규정의 내용에 부합하여 내역사업명 및
내역사업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 및 합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